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 4 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통일규칙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과 캐나다(이하 "참여국"이라 한다),

한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원산지절차 및 무역원활화 장 제 4.12 조(통일 규칙)에 따라,

이 협정 제 4 장(원산지절차 및 무역원활화)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 규칙」을 수립하면서,

다음의 양해에 이르렀다.

원산지 증명서

1. 각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1 조제 1 항에 언급된 다음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할 것이다.

- 가. 부속서 가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와 내용상 동등한 것으로,
- 나. 상품이 수입되는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승인하는 전자형태를 포함하여, 인쇄된 형태 또는 다른 매체로 하고,
- 다. 이 양해각서와 부속서 가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작성요령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작성된다.

2. 이 협정 제 4.1 조제 2 항의 목적상,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참여국(이하 "수입참여국"이라 한다)의 관세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그 참여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다.

3.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1 조제 5 항의 목적상, 단일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양해한다.

- 가. 참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하나 이상의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 나. 참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하나의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 상품의 복수 선적

수입

4. 양 참여국은 협정 제 4.2 조제 1 항라호의 목적상, 상품이 수입되는 영역의 참여국 관세행정기관이 다음의 경우, 그 관세행정기관에 수정된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최소 5 영업일을 부여할 것을 양해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를 읽을 수 없거나 표면상 결함이 있거나 이 양해각서 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나. 원산지 증명서와 이 협정 제 4.2 조제 1 항나호에서 언급된 서면 신고서 간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5. 이 협정 제 4.2 조제 1 항마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 수정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 경우,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2 조제 2 항나호에 따라 다음의 경우 처벌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 한국의 경우, 신고서가 부정확하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입자가 수정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신고서가 부정확하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수입자가 수정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6. 이 협정 제 4.6 조(원산지 검증)에 따라 수행된 원산지검증의 결과로서,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이 협정 제 4.1 조제 5 항나호에 따라 동일한 상품의 복수 수입에 적용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경우, 양 참여국은 그 원산지 증명서가 이 협정 제 4.6 조제 10 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그 서면 결정이 제공된 날 이후 수입되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을 양해한다.

7. 이 협정 제 4.2 조제 1 항라호에 따라 수입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수입자는 그 상품이 이 협정 제 3.16 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선적되었음을 그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다음을 제출하면서 입증해야 할 것이다.

가. 상품의 수입 전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그리고

- 나. 상품이 비참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그 상품이 그 비참여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그 관세행정기관에 나타내는 세관 통제 서류의 사본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8.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3 조(원산지 증명서의 면제)의 목적상, “일련의 수입” 이란 다음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같은 날 도착한 동일한 상품이거나 하나의 송장 또는 하나의 선하증권에 의한 두 개 이상의 수입신고, 그리고
- 나. 캐나다의 경우, 상품의 판매자가 그 상품의 구매자에게 발행한 하나의 상업송장에 해당하지만 개별 상품에 대한 복수 수입

수출

9.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6 조제 10 항에 따라,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상품은 비원산지 상품이라는 내용의 서면결정서를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 협정 제 4.4 조제 1 항나호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받은 모든 인에게 통보할 것을 양해한다.

기록유지요건

10. 각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5 조(기록유지요건)에 따라 유지되도록 요구 받는 기록은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 직원이 이 협정 제 4.6 조(원산지 검증)에 따라 원산지의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그 기록에 대한 상세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할 것을 보장할 것이다.

- 가. 수입자의 경우, 그 참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이루어진 특혜관세대우 신청, 그리고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경우, 다른 쪽 참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

11. 각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5 조(기록유지요건)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 받는 참여국 영역의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가 그 기록이 복구

되고 인쇄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 참여국의 국내법에 따라 어떠한 매체로도 그러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허용된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12. 각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5 조가호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 받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이 협정 제 4.6 조제 2 항의 통지 및 동의요건에 따라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 직원이 그러한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13. 참여국은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제 4.5 조(기록유지요건)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 받는 그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제 11 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요건 및 이 양해각서에 따라 그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그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원산지 검증

14.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다호의 목적상,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가호 및 나호에 따른 서면질의서 및 검증 방문의 방법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다음의 방법으로 그 참여국의 영역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한다.

가. 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참여국 영역에 있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정보를 요청하는 검증 서한, 또는

나. 검증을 수행하는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그 밖의 모든 방법

15. 제 16 항을 조건으로,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 14 항나호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관세행정기관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신을 근거로, 이 협정 제 4.6 조제 10 항에 따라 다음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가. 그 회신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서명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판정, 또는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을 갖추었다는 판정

16. 양 참여국은 상품의 생산자가 이 협정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대로 그 상품의 순원가를 산출하는 경우, 그 상품이 수입된 영역의 참여국 관세행정기관은 그 순원가가 산출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상품이 가치평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아니할 것을 양해한다.

17.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가호에 따른 서면 질의서 또는 제 14 항가호에 언급된 검증 서한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질의서 또는 요청된 정보와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그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상이라는 것을 기재할 것을 양해한다.

18.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가호 및 다호와 제 14 항가호에 따라 작성된 질의서 또는 검증 서한에서 요구된 정보와 문서를 접수하였고 검증대상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관세행정기관은 제 17 항에 따른 질의서, 통지, 또는 어떠한 추후 검증 방법을 통해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9. 양 참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 17 항에 언급된 기간내에 적절하게 작성된 질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검증 서한에서 요구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수입참여국은 제 20 항의 절차에 따라 문제의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한다.

20.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원산지 검증 결과로서 검증대상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경우, 이 협정 제 4.6 조제 10 항에 따라 규정된 서면 결정서는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한다는 서면 의사 통보를 포함해야 할 것이고, 특혜관세대우가 거부되는 일자와 그 결정에 대해 검증이 종료되기 전에 고려되어야 할 서면 소명서 또는 추가 정보를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30 일 이상의 기한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21.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6 조(원산지 검증)의 목적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수출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대한 모든 통지는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될 것임을 양해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그러한 접수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22.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6 조제 5 항과 제 4.6 조제 6 항의 목적상, 검증 방문의 연기에 대한 통지 또는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검증방문을 수행한다는 의사통보를 발송한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 사무소의 주소지로 발송되어야 할 것을 양해한다.

23.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6 조제 8 항의 목적상,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관세행정기관에 대해 그러한 방문 동안 참석하도록 지정된 모든 참관인들을 적시하여야 할 것임을 양해한다.

24.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가호에 언급된 서면 질의서의 공통기준은 부속서 나에 규정되어있다.

25. 양 참여국은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상품의 수입자가 다른 쪽 참여국 영역의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서면정보를 자발적으로 입수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다만 그 수입자가 그러한 정보의 입수 및 제출을 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는 근거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26. 이 양해각서는 참여국 영역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되는 참여국 영역에서는 또한 그 상품의 수입자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이 협정 제 4 장(원산지절차 및 무역 원활화)에 따라 규정된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7.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6 조제 11 항의 목적상, “행위유형” 이란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을 2 회 이상 행한 경우로서, 동일 상품에 대하여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로서 결론 내리는 서면 결정서를 이 협정 제 4.6 조제 10 항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2 회 이상 발송한 것을 말하는 것임을 양해한다.

28. 양 참여국은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이 협정 제 4.6 조(원산지 검증)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경우, 그 재료의 검증은 다음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될 것임을 양해한다.

가. 이 협정 제 4.6 조(원산지 검증)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5 항, 제 7 항 및 제 8 항, 그리고

나. 제 14 항부터 제 17 항까지, 제 21 항, 제 22 항, 제 23 항, 제 25 항 및 제 26 항

29. 양 참여국은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 28 항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재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의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세행정기관이 그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료를 비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 가. 관련 기록에 대한 접근의 거부,
- 나. 검증 질의서 또는 서한에 대한 회신 실패, 또는
- 다. 제 28 항에 따라 적용되는 이 협정 제 4.6 조제 4 항에 따라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검증 방문에 대한 동의의 거부

30. 참여국은 이 양해각서 제 28 항에 따라 적용되는 이 협정 제 4.6 조제 5 항 및 제 4.6 조제 6 항에 따른 검증 방문을 연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라고 간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전심사결정

31.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10 조(사전심사결정)의 목적상,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다른 쪽 참여국 영역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 그 다른 쪽 참여국 영역의 생산자에게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것을 양해한다. 다만, 그 상품이 그 재료와 관련하여 이 협정 제 4.10 조제 1 항가호부터 라호까지 그리고 사호에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한 참여국 영역으로 이후에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32. 사전심사결정 신청시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에 관한 공통기준은 부속서 다에 규정되어 있다.

33.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10 조(사전심사결정)의 목적상,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대한 사전심사결정의 신청은 이 협정 제 4.1 조제 2 항에 따라 그 참여국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할 것임을 양해한다.

34.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10 조제 3 항과 이 양해각서 제 35 항에 따라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받은 관세행정기관은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보충 자료를 포함하여 그 신청을 처리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수입참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긴 기간 이내에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해야 할 것임을 양해한다.

35.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10 조제 2 항의 목적상,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의 신청이 불완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그 신청을 처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가. 관세행정기관이 필요한 보충 정보와 신청자가 그 정보를 제출 할 수 있는 30 일 이상의 정보제출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였고,

나.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36. 양 참여국은 이 협정 제 4.10 조제 3 항과 이 양해각서 제 35 항은 어떠한 인이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재신청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을 양해한다.

37. 이 협정 제 4.10 조제 8 항의 목적상, “상품의 수입” 이란 다음을 말 한다.

가. 한국의 경우, 「관세법」 제 9 장에 따라 반출된 상품,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관세법」 제 31 절에 따라 반출된 상 품

재심 및 불복청구

38. 이 양해각서에 따라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이 협정 제 4.6 조제 4 항 및 제 4.7 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및 이 양해각서 제 19 항에 따른 특혜 관세대우의 거부를 포함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이 거부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 협정 제 4.11 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따라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39. 이 협정 제 4.10 조(사전심사결정) 또는 제 31 항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사전심사결정의 변경 또는 철회는 이 협정 제 4.11 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따라 재심 및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타 규정

40. 이 협정 제 4 장(원산지질차 및 무역원활화) 그리고 이 양해각서의 목적상, “작성된”이란 작성되고, 서명되며 일자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41. 각 참여국은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자국의 통관절차가 이 협정 제 4 장(원산지질차 및 무역원활화) 및 이 양해각서에 따른 것임을 보장할 것이다.

발효, 변경 및 종료

42. 이 양해각서는 이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43. 양 참여국은 상호 동의 하에 어느 때든지 이 양해각서를 서면에 의해
서 변경할 수 있다.

44. 이 양해각서는 이 협정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이 중지될 것이다.

2014년 9월 22일 오타와에서 각 버전이 동등하게 유효하게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캐나다를 대표하여

부속서 가

원산지 증명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작성요령은 뒷면에 기재)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작성한다.

1. 수출자 이름 및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참조번호:	2. 포괄증명기간: 연도 월 일 부터 연도 월 일 까지 부터: 까지:				
3. 생산자 이름 및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참조번호:	4. 수입자 이름 및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5. 물품명세	6. HS 품목번호	7. 특혜기준	8. 생산자	9. 가치평가	10. 원산지 국가

본인은 다음을 보증한다.

-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 문서상이나 이 문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 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한다.

- 이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이 원산지이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이 상품에 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 쪽으로 구성된다.

11. 서명권자의 서명:	회사:
이름:	직위:
연도 월 일 날짜:	전화: 팩스: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

특혜관세대우 획득의 목적상, 수출자는 이 문서를 명료하고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신고시에 이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또한 수출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기재한다.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1 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선택사항)를 기재한다.

2 란: 이 증명서가 최장 12 개월(포괄증명기간)의 특정기간 동안 한국 또는 캐나다로 수입되는 제 5 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을 다룰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다(이 날은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수입은 이러한 날짜 사이에 발생해야 한다.

3 란: 생산자가 1 명인 경우에는,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선택사항)를 기재한다. 두 명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 “다수”로 기재하고 5 란에 기술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선택사항)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 이 정보를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 요청시 제출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4 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5 란: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물 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중명서가 상품의 단일선적 상품을 다루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가능할 경우, 일련번호 포함), 그리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그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번호를 기재한다.

6 란: 5 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 HS 품목번호를 6 단위까지 기재한다.

7 란: 5 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 아래 기준(A부터 D까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 3 장(원산지 규정)과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주: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하여, 각 상품은 아래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특혜 기준

A 그 상품이 제 3.2 조(완전하게 획득)에 언급된 대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주: 그 영역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반드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참조: 제 3.1 조(원산지상품) 및 제 3.2 조(완전하게 획득))

B 그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이 기준 하에서 하나 이상의 재료는 제 3.2 조(완전하게 획득)에 규정된 대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제 3.1 조가호 1 목, 2 목 및 3 목 규정을 충족시킴으로써 "원산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 제 3.1 조가호 1 목, 2 목, 및 3 목 그리고 제 3.3 호(충분한 생산))

C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그 세번에 적용되는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이 규정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과 가치평가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그 상품은 또한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참조: 제 3.1 조나호)

D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으나 특정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 3.4 조(가치평가)에 규정된 가치평가를 충족하는 경우. 이 기준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결합된 상품이, 그 상품과 그 비원산지 재료가 같은 소호 또는 소호로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는 호로 분류되어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 이 기준은 HS 제 1 류부터 제 21 류까지, 제 39.01 호부터 제 39.15 호까지 또는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 제 3.3 조제 2 항)

8 란: 5 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예”를 기재한다. 본인이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이 증명서가 근거로 하는 기준에 따라 "아니오"를 쓰고 (1), (2) 또는 (3)을 기재한다.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본인의 지식,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원산지 증명서 제외)에 대한 본인의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상품에 대해 작성되고 서명된 증명서

9 란: 5 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 상품이 가치평가의 대상이 된 경우, 그 가치평가가 순원가를 기초로 하는 경우 “NC” 또는 그 가치평가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경우 “TV”라고 기재한다. 그 가치평가가 일정기간에 걸친 그 상품의 순원가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년/월/일)을 추가로 기재한다. (참조: 제 3.4 조(가치평가))

10 란: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CA”를, 캐나다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KR”을 기재한다)

11 란: 이 란은 수출자에 의해 작성, 서명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수출자의 사용을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생산자는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

부속서 나 서면질의서에 대한 공통기준

1. 제 24 항의 목적상, 양 참여국은 일반 질의서에 포함될 공통 질의사항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2. 이 부속서의 제 3 항에 따라, 한쪽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관세행정기관은 이 부속서 제 1 항에 언급된 일반 질의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송부한다.
3.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가호의 목적상, 한쪽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일반 질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관세행정기관은 검증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질의서를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4. 제 24 항의 목적상, 질의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상품이 수입된 영역의 참여국 언어로 작성되거나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소재한 영역의 참여국의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5. 이 부속서는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 및 이 양해각서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다

사전심사결정 신청에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공통기준

1. 이 협정 제 4.10 조제 2 항의 목적상, 각 참여국은 사전심사결정 요청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요청하는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름 및 주소,

나. 신청인이

1) 그 상품의 수출자인 경우, 그 상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아는 경우에 한한다),

2) 그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그 상품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아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3) 그 상품의 수입자인 경우, 그 상품의 수출자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아는 경우에 한하여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다.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심사결정 발급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그 인이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수속을 처리하기 위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나타내는 다음 중 하나

1) 사전심사 발급 신청인의 서면 진술서, 또는

2) 그 참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시,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요청 중인 심사를 대리 신청한 신청인으로부터의 증명

라. 신청인이 아는 범위에 기초하여, 어느 한쪽 참여국의 영역 내에서 사전심사결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다음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안의 처리현황 및 결과에 관한 간략한 진술

1) 원산지 검증,

- 2) 행정심사 또는 불복청구,
- 3)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또는
- 4) 사전심사결정 신청

마. 사전심사결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신청인이 아는 범위에 기초하여 그 사전심사 요청을 받은 참여국의 영역으로 이전에 수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

바.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진술, 그리고

사. 사전심사결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일체의 관련 사실 및 상황에 관한 완전한 설명

- 1) 이 협정 제 4.10 조제 1 항의 범위 내에서, 사전심사결정이 신청된 사안에 대한 간결한 진술, 그리고
- 2) 그 상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2. 사전심사결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된 경우, 이 부속서의 제 1 항에 언급된 정보 이외에 다음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받은 참여국이 그 상품에 대해 신청인에게 발급한 품목분류 관련 사전심사결정 또는 그 밖의 결정의 사본, 그리고

나.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받은 참여국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 관련 이전 사전심사결정 또는 그 밖의 심사결정을 한 적이 없는 경우, 그 참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충분한 정보

- 1) 관련된 경우, 상품의 구조, 상품의 제조공정 기술, 상품의 포장에 관한 기술, 상품의 기대되는 사용 및 그 상품의 상업적, 일반적 또는 기술적 용도, 제품설명서, 도면, 사진 또는 설계도를 포함하는 그 상품에 관한 완전한 설명, 그리고

- 2) 실제적이고 유용한 경우, 그 상품의 견본

3. 사전심사결정 신청이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수반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목록,
- 나. 원산지 재료로 신청된 가항에 언급된 각 재료와 관련하여, 그 재료가 원산지 재료로 고려되는 근거를 포함하여 그 재료에 대한 완전한 설명,
- 다. 비원산지 재료이거나 그 원산지가 알려지지 아니한 가항에서 언급된 각 재료와 관련하여, 그 재료의 품목분류를 포함하는 그 재료에 대한 완전한 설명, 그리고
- 라. 그 상품의 생산에 적용된 모든 가공작업, 각 작업 장소 그리고 작업단계별 순서에 대한 설명

4. 사전심사결정 신청이 가치평가기준을 수반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신청이 다음의 사용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 가.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 나. 순원가법, 또는
- 다. 위 두 방법

5. 사전심사결정 신청이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수반하는 경우, 이 협정 제 3.4 조(가치평가)에 따라 그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거래에 대하여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산출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6. 사전심사결정 신청이 그 상품의 순원가법을 수반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가. 이 협정 제 3.4 조(가치평가)에 따라 그 상품의 순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그리고
- 나. 순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기간

7. 사전심사결정 신청이 가치평가기준 계산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이 부속서 제 1 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이외에 사전심사결정 신청의 대상이 되

는 사안과 관련된 이 부속서의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규정된 정보만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8. 사전심사결정 신청이 제 31 항에 따라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한정되는 경우, 이 부속서 제 1 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이외에 사전심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된 이 부속서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규정된 정보만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